

의안번호	2219639
의 퇴 인	강경숙의원
회 답 일	2026.08.20.
추 계 번호	26C3199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091만원, 2031년 4,426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8,517만원(연평균 1,703만원) 이상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1	-	-	-	44	85	17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교육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와 상이할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라 세부 항목의 합산액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을 총괄하며,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세부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항).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에 관한 시책을 시행할 때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보호자와 교원은 이주배경학생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5조 (실태조사)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한국어 역량, 교육 수요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6조 (맞춤형 교육지원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한 한국어학급의 운영 2.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프로그램 보급 등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3. 공교육 진입 지원 및 심리·정서 상담 지원 4.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 교육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특화된 현장실습 및 취업 교육 지원 5. 조기 적응 지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 제도 안내 및 교육 지원 6. 그 밖에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5	안 제7조 (이주배경학생의 균형 배치)	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이주배경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8조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집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7	안 제9조 (학교 운영의 자율성 부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밀집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밀집학교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한다(제2항). 제2항에 따른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3항).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아닌 학생의 통합 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0조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1항). 1. 교원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 2.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및 밀집학교 현장 실습 확대 3. 밀집학교 장기근무 교원에 대한 연수 및 해외 교류 등 제공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책무를 명시한 선언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
2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	·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3	안 제5조 (실태조사)	×	· 제정안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교육부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2항¹⁾에 근거하여 매년 이주배경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을 분리하여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6조 (맞춤형 교육지원의 실시)	×	· 제정안 시행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보급, 현장실습 및 취업 교육 등의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제정안에 명시된 맞춤형 교육지원의 대부분이 공교육 진입 안내, 한국어능력 진단검사 실시, 한국어 예비과정 및 한국어학급 운영 등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사업과 중복되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6조 (맞춤형 교육지원의 실시)	×	<table><tr><th>제정안 내용</th><th>현황</th></tr><tr><td>한국어학급 운영</td><td>한국어학급 운영(153억원)²⁾</td></tr><tr><td>한국어 교육 지원</td><td>한국어교육 프로그램(모두의 한국어) 운영, 맞춤형 학습 지원</td></tr><tr><td>공교육 진입 지원 등</td><td>공교육 진입 안내서(15개 언어) 배포³⁾</td></tr><tr><td>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td><td>-</td></tr><tr><td>조기 적응 지원</td><td>한국어 예비과정 도입</td></tr><tr><td>그 밖에 필요한 사항</td><td>선도교원 양성(4억원)</td></tr></table>	제정안 내용	현황	한국어학급 운영	한국어학급 운영(153억원) ²⁾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모두의 한국어) 운영, 맞춤형 학습 지원	공교육 진입 지원 등	공교육 진입 안내서(15개 언어) 배포 ³⁾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	조기 적응 지원	한국어 예비과정 도입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선도교원 양성(4억원)
			제정안 내용	현황													
			한국어학급 운영	한국어학급 운영(153억원) ²⁾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모두의 한국어) 운영, 맞춤형 학습 지원													
			공교육 진입 지원 등	공교육 진입 안내서(15개 언어) 배포 ³⁾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													
			조기 적응 지원	한국어 예비과정 도입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선도교원 양성(4억원)																
5	안 제7조 (이주배경학생의 균형 배치)	-	· 이주배경학생 배치 계획 수립·시행은 관할 구역 내 이주배경학생 수의 증감을 유발하지 않고, 교육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⁴⁾ 에 따라 매년 학생배치계획 수립 의무를 부담하므로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키지 않음														
6	안 제8조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 안 제9조 (학교 운영의 자율성 부여) 안 제10조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	×	· 제정안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집학교 지원, 교원 임용 및 수당 지급,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시점에서 밀집학교 의 수, 교원 임용 및 연수 규모 및 지원 단가 등 사업의 구체사항이 불확정적이므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제정안에 따라 5년 주기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발생하며,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 자료 제작,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함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의 평균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8,517만원으로 추계

[표 2]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

(단위: 만원)		
과제명	사업연도	연구용역비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비전 및 주요과제 설정 연구	2021	3,000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022	3,636
제3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022	1,818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4	9,000
제3차 인성교육종합계획 기획 기초 연구	2024	3,000
평균		4,091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3]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41	-	-	-	44	85	17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교육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와 상이할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라 세부 항목의 합산액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교육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와 상이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